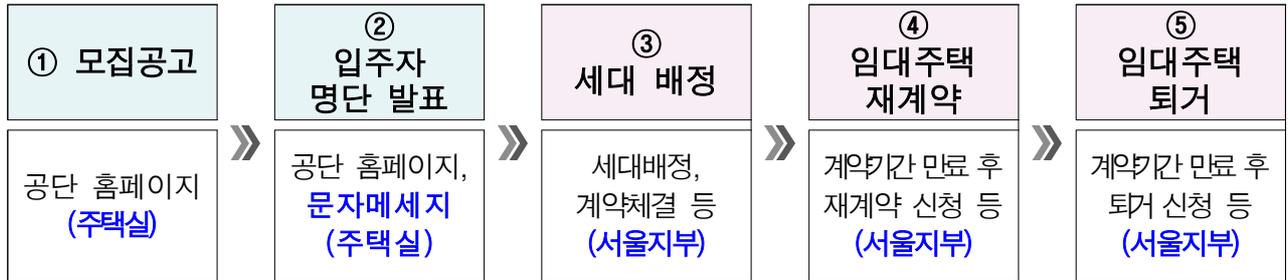


서울개포 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입·퇴거 관련 FAQ

□ 임대주택 입·퇴거 절차



□ 모집 공고 일정

구 분	서울개포 임대주택 모집공고	
	일시	기간(영업일)
모집 공고일	3.30.(목)	
신청개시	3.30.(목), 14:00	11일(7일)
신청마감	4. 9.(일), 24:00	
심사대상자 발표	4.13.(목), 17:00	
심사서류 제출개시	4.13.(목), 17:00	8일(6일)
심사서류 제출마감	4.20.(목), 24:00	
소명대상자 발표	4.21.(금), 17:00	
소명자료 제출개시	4.21.(금), 17:00	6일(4일)
소명자료 제출마감	4.26.(수), 24:00	
입주자 발표	5. 2.(화), 17:00	

□ 절차별 주요 FAQ

1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

순번	주요 질문 & 답변
1	<p>Q. 무주택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</p> <p>A.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2의 3호에 따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
2	<p>Q.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임대주택 소재지 내 분양권의 경우 입주 신청이 불가합니다. ※ 단, 2018.12.11. 이전 공급 체결된 분양권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</p>
3	<p>Q. 여러 평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</p> <p>A.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</p>
4	<p>Q. 타 소재지 기관 소속이지만, 실 근무지가 소재지(파견)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신청 가능하며, 파견자의 경우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근무 확인서 등)를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</p>

2 입주자 명단 발표 관련

순번	주요 질문 & 답변
1	Q. 입주자 발표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? A. 최종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‘개포 입주모집’ 게시판 및 발송된 개별 문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※ 공단 홈페이지 → 알림과소통 → 개포 입주모집
2	Q. 입주는 언제 할 수 있나요? A. 입주지정기간은 2023. 5. 4.부터 2023.10. 31.(6개월)까지입니다.
3	Q.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? A.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 변경은 불가하며, 재계약시에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③ 입주자 선정(세대 배정) 관련

순번	주요 질문 & 답변
1	<p>Q. 잔금 납부는 언제까지며, 기한 내 완납을 하지 못할 시 어떻게 되나요?</p> <p>A. 잔금 납부는 계약체결 시 지정하신 입주일 까지며, 기한 내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이사가 불가능하고, 미납금에 대해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어 추가로 청구됩니다. 또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
2	<p>Q. 배정받은 세대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</p> <p>A. 세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</p>
3	<p>Q. 계약체결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</p> <p>A. 계약체결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, 납부한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해드립니다. 다만, 입주일이 지난 후에 포기하시는 경우, 따로 포기 신청이 불가능하며, 퇴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</p> <p>※ 위약금 산정 : 전세임대보증금×4.9%(2023년 적용금리)×2년×10/100</p>
4	<p>Q. 공무원 임대주택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. 단, 세대분리형 주택(19㎡, 40㎡)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불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5	<p>Q.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?</p> <p>A. 전입신고는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거, 입주와 동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</p>

4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

순번	주요 질문 & 답변
1	<p>Q. 재계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</p> <p>A. 심사기간(3~4주 소요)을 고려하여,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연금복지포탈 ‘주택/분양/임대 → 입주 신청결과확인(재계약 신청 및 계약서/고지서) → 재계약신청’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
2	<p>Q. 고령자 부양(65세 이상) 등으로 재계약 시,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</p> <p>A. 재계약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심사하며, 해당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등재 되어있어야 합니다. 다만 입주완화단지의 경우, 심사 시점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.</p>
3	<p>Q. 분양권이 있으면 입주일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,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말일까지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.</p>
4	<p>Q. 계약 중 주택을 구입했다가 다시 판 경우 재계약 가능한가요?</p> <p>A. 계약 중 주택을 취득했다가 매도한 경우도,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.</p>
5	<p>Q.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요?</p> <p>A. 2018.12.11. 이후에 계약된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봅니다.</p>
6	<p>Q.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보나요?</p> <p>A.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도 주택소유에 해당됩니다.</p>

5 임대주택 퇴거 관련

순번	주요 질문 & 답변
1	<p>Q. 퇴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</p> <p>A. 퇴거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(연금복지포털)를 통해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.</p>
2	<p>Q.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?</p> <p>A. 퇴거일 전일(영업일 기준) 3시경에 반환됩니다.</p>
3	<p>Q. 퇴거한 후 재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?</p> <p>A. 완전히 퇴거한 후 모집공고에 재신청은 가능하나, 2년 이상 입주하신 경우에는 기수혜자에 해당되고, 입주 중일 경우는 퇴거 신청을 했더라도 입주신청은 불가합니다.</p>
4	<p>Q. 퇴거 시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</p> <p>A.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정산하면 됩니다.</p>